

증서	년	제	호
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공정증서			
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.			
제1조 채무자는 년 월 일 채권자 에 대하여 년 월 일 매수한 대금 원의 잔액이 년 월 일 현재 금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.			
제1조 채무자는 년 월 일 채권자 에 대하여 채무자가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금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.			
제2조(변제기한과 방법)			
제3조(이자)			
제4조(변제의 장소)			
제5조(지연손해금)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.			
제6조(기한 이익의 상실)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.			
1.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			